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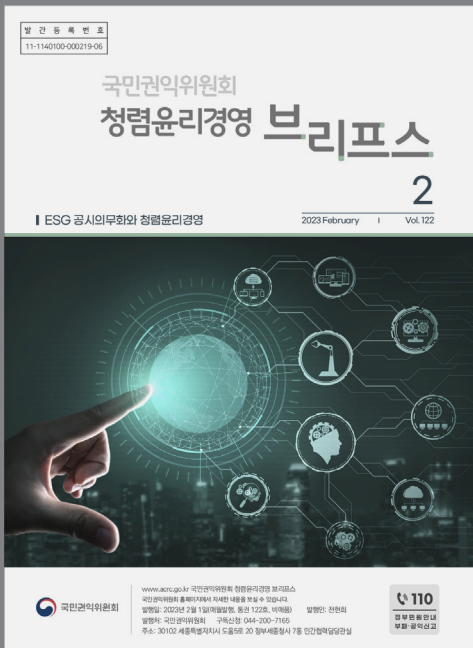
2

ESG 공시의무화와 청렴윤리경영

2023 February

Vol. 122





COVER STORY

산업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이 ESG정보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제기구의 표준화 또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더 강력히 의무공시화하는 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2022년 11월 28일 최종 승인하였으며 그에 앞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은 보고 표준안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해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재단이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2023년 상반기 ESG 공시기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해 12월 민간의 체계적 대응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 ‘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시제도 정비’는 인프라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공시규율이 제정,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반부패와 윤리경영’이 어떤 요건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01	전문가 코칭	04
	ESG 공시와 반부패·윤리경영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02	사례돌보기	08
	의류·섬유산업의 공급망 관리와 윤리경영	
03	보고서리뷰	12
	ESG시대 반부패 역할: 청렴에의 투자 Investing in Integrity in an Increasingly Complex World: The Role of Anti-Corruption amid the ESG Revolution (2022.06)	
04	행동하는 윤리경영	17
	ESG 공시지표로 보는 반부패·윤리경영	
05	문화 속 기업윤리	23
	기업투명성, 리스크 관리의 시작 영화, '다크 워터스'	
06	뉴스클립	24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07	웹툰 윤리네컷	28
	ESG 공시와 기업윤리	
08	행사소식	29
09	퀴즈	31



ESG 공시와 반부패·윤리경영

전문가 코칭

백 태 영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번 호에서는 ESG 공시 표준 동향에 대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초대위원장인 성균관대 백태영 교수를 인터뷰하였다. ISSB는 국제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고자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재단이 설립한 독립 기구로, 2022년 3월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고 각 국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ESG 공시 표준화 흐름에서 반부패, 윤리경영이 지니는 의미와 앞으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현재 ESG 공시기준에서 반부패·윤리경영 관련 쟁점은 무엇인지요?

반부패는 ‘거버넌스(G)’의 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S)’에도 걸쳐 있는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윤리경영의 실패는 뇌물수수, 자산횡령, 허위보고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야기되는 비효율적 자원배분나 뇌물비용이 반영된 상품가격과 같은 시장왜곡은 공정경쟁에 반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협력사,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부패는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나 뇌물에 의해 조직에 피해를 주는 청탁을 들어주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임직원 개인의 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비리는 내부통제나 내부감사 시스템을 잘 구축 운영하여 방지하고 적발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조직을 위해서 외부인(공조직이나 사기업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반부패법 등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유형이며, 이 경우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은 개인 이익이 아닌 조직을 위한 행위로 여기거나 조직내부의 압력에 의해 실행하므로 이를 내부에서 막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 법적 제재가 해결수단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공시제도에 의한 사회적 압력도 이 두 번째 유형의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공시방식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를 위해 2015년 설립된 글로벌 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에서 사용하여 ISSB를 포함한 다수의 ESG 및 지속가능성 기준들이 사용하는 4가지 핵심요소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핵심요소〉

거버넌스 ¹⁾	보고 주체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는 거버넌스 과정, 통제 및 절차
전략	조직의 전략이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는 방법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 및 완화하는 방법
지표와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기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척사항을 포함

출처: ISSB's proposed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2022. 05)

기업은 각 요소에 따라 반부패 및 윤리경영 정보를 공시합니다. 먼저 거버넌스 요소에서 부패 행위를 막는 조직의 의지를 나타내는 이사회 의사결정 내용과 절차, 담당부서 운영 등을 다루며, 조직이 반부패경영을 지향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인 전략 요소를 공시하게 합니다. 또, 부패가 장기적으로 조직과 사회에 입히는 피해에 대해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위험관리 차원에서 부패방지 및 사후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며, 이러한 경영활동 효과에 대한 측정지표와 목표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투자자, 고객, 사회공동체 등의 이해관계자가 공시정보를 통해 투자 결정 또는 철회 등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기업에 다양한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Q2> 구체적으로 ESG 공시기준에서 반부패·윤리경영 지표는 어떤 내용인지요?

ISSB가 제정 중인 첫 두 기준은 아직 반부패·윤리경영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ISSB가 속한 IFRS재단에 합병되어 ISSB가 관리하게 된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기준 중 반부패·윤리경영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1) 이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과정과 역할에 관한 것으로 ESG의 한 주제로서의 거버넌스와 조금 다르다.

SASB 기준 내용이 장기적으로 ISSB 기준으로 통합될 것이므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SASB 기준은 산업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전기 및 전자장비 산업을 보면 ‘기업윤리’ 주제에 반부패 내용이 다뤄집니다. SASB는 사회적 영향 관점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관리 관점의 기준이므로 기업윤리 문제의 기업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및 전자장비 제조업체는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과 같은 부패방지법의 위반 및 반경쟁적 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 비윤리적 관행은 평판 위험으로 인해 미래 수익 증대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며 상당한 법적 비용과 더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윤리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은 기업윤리와 관련된 법 위반 위험과 그에 따른 행정 제재 또는 브랜드 가치 영향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다.”

SASB의 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은 각 주제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회계지표’로 구성되며, 해당산업의 반부패 영역 회계지표는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부패 및 뇌물 수수와 (2)반경쟁적 행위 방지 정책 및 관행 설명(지표번호: RT-EE-510a.1)’이며, 두 번째는 ‘뇌물 수수 또는 부패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지표번호: RT-EE-250a.1)’입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공시기준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SASB 전기 및 전자장비 산업의 ‘기업윤리’ 관련 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 내용
RT-EE-510a.1	(1) 부패 및 뇌물 수수 및 (2) 반경쟁적 행위 방지 정책 및 관행의 설명	1. 기업은 부패 및 뇌물 위험을 내부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가치사슬 내 사업 파트너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관리체계와 실사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2. 관리체계에 관련된 측면에는 종업원 의식제고 프로그램, 위반 의심 사례 신고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내부 메커니즘, 반부패 정책이 포함된다. 3. 기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행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지침 3.2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금품 강요 및 뇌물 수수에 관한 행동준칙 3.3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뇌물방지를 위한 기업 활동 준칙 3.4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번째 원칙 3.5 세계경제포럼(WEF)의 반부패연대이니셔티브(PACI)

RT-EE-250a.1	뇌물 수수 또는 부패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결과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	1. 기업은 뇌물 수수 및 부패 관련 사건과 연관된 법적 절차의 결과로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적 손실 총액을 공시해야 한다. 2. 해당 법적 절차에는 법원, 규제당국, 중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재결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 손실에는 모든 주체(예: 정부기관, 기업, 개인)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예: 민사 판결 또는 합의), 규제절차의 결과(예: 제재,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형사소송의 결과(예: 형사 판결, 제재, 원상회복)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합의 또는 재판 후 평결이나 기타의 결과인) 벌금 및 기타 금전적 채무를 포함한 상대방 또는 다른 자에 대한 모든 금전적 채무를 포함해야 한다. 4. 항변 과정에서 기업에 발생하는 수임료 및 기타 수수료와 비용은 금전적 손실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5. 공시 범위는 다음과 같은 관련 산업 규정 시행과 관련되는 법적 절차를 포함해야 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5.1 영국 뇌물수수법 5.2 1977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	--	---

출처: SASB '지속가능성회계기준': 전기 및 전자장비 산업

Q3> 반부패·윤리경영 공시강화에 따라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기업의 ESG 의무공시에 반부패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강화되는 장기적 추세에 대응하여 기업은 앞서 언급한 4가지 핵심 운영요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반부패 거버넌스 절차의 마련과 전략 구축, 부패리스크 관리, 성과관리를 위한 측정지표와 목표 설정 등 기업 활동의 전 영역에 걸친 적용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경영방식의 변화, 즉 윤리경영의 철학 확산과 실행이 단기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장기적 기업 성장과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경영진의 확신과 전 조직내의 인식 확산이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입니다. 그에 따라 공시의 개선과 법적 준수가 결과적으로 달성될 것입니다.



사례돌보기

의류·섬유산업의 공급망 관리와 윤리경영



의류·섬유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분류된다. 2013년 천여명의 희생자를 낸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공장 붕괴사건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착취라는 봉제의류산업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NGO단체 ‘Clean Clothes Campaign’은 글로벌 기업의 단발성 구매관행과 같은 불안정한 협력관계, 대금삭감 등의 무리한 운영, 불법건물 증축이라는 비윤리적 행태가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는데, 생산공장을 둔 유럽 및 미국 의류브랜드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에 대한 필요한 점이 부각되면서 프랑스에서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사례돌보기에서는 의류 및 섬유기업의 공급망 관리차원 청렴윤리경영 활동을 살펴본다. 기업 내부를 넘어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에이치앤엠(H&M)

H&M은 스웨덴에서 1947년 설립된 의류회사로 1970년대 스톡홀름주식시장 상장 이후 2000년대 미국 및 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여, 2013년 전세계적으로 3천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거대기업이다.

H&M은 'The H&M Way(의역: H&M방식)'라는 비즈니스관행 지침을 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가장 좋은 가격에 패션과 품질을 유지한다'는 명확한 창립이념을 지니고 있으며, The H&M Way은 창립이념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도구임을 설명한다. 즉, 글로벌 기업으로 수천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매일 새롭게 채용되는 임직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H&M Way은 임직원과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담고 있다. 또한 H&M은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에 윤리강령을 거래 시 서명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천을 의무화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비즈니스에 있어 '윤리적이고, 솔직하고(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모든 부패에는 관용이 없으며, 모든 선물은 엄격히 금지함과 동시에 해당 정책은 명확하고, 쉽고, 여지가 없음을 명시한다.

2021년 H&M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면, 윤리강령에 따라 공급망 기업의 실사 진행 경과를 공시하고 있다. 해당 연도 기준 1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1건의 서면경고와 5건의 계약해지로 이어졌다. H&M은 윤리경영 실천에 대해 협동적 비즈니스 관계는 '위험과 성과'라는 결과를 공유하는 관계임을 당위적이고,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The H&M Way: 우리의 가치와 지침에 따라 매일 생활한다〉

The H&M way

– living by our values and guidelines every day



H&M is built on solid foundations. Our business concept "Fashion and quality at the best price" is as clear as our values, which are based on a fundamental respect for each individual and include a firm belief in our people. Other shared values are teamwork, simplicity, entrepreneurial spirit, cost consciousness, straightforwardness and openness, as well as striving for constant improvements. These values represent "the H&M spirit" and they are the very same values as those on which H&M was first founded by my grandfather Erling Persson in 1947.

Today we are a global company, with many thousands of H&M colleagues who serve millions of customers. We come from many different backgrounds and nationalities, but no matter who we are, we are united by the H&M spirit and the desire to give our customers the best possible fashion deal – the best combination of fashion, quality and price.

We are present in many markets around the world, expanding rapidly and recruiting new employees every day. At this time of strong expansion, our success is more than ever dependent on our people. We are judged on how we act and how we treat each other, our customers, our suppliers and other stakeholders as we do business and interact with the world around us every day.

In this context it is vital that no matter what our role is at H&M, we always live according to our values and guidelines and that we are all good H&M role models in everything we do. When we do business "the H&M way" we do so ethically, honestly and responsibly. We continually encourage our suppliers and other business partners to do the same.

Written in this document is what we at H&M already know by heart. But since we are all ambassadors for H&M, I would like to emphasise the importance of our values and guidelines as they are always the starting point for how we act. Living by them every day is fundamental to our business and to our long-term suc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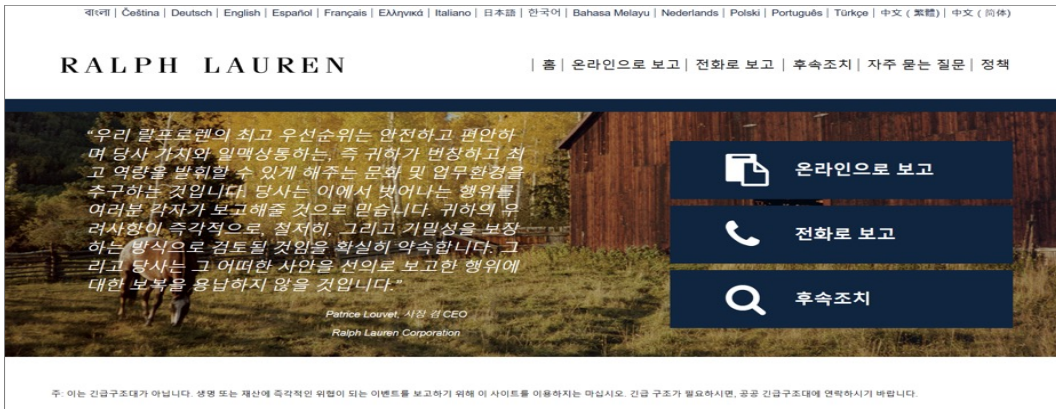


Karl-Johan Persson
CEO H&M Hennes & Mauritz AB

2. 랄프로렌(Ralph Lauren)

미국의 의류기업 랄프로렌은 비즈니스 윤리 정책공시와 핫라인 운영을 위한 웹사이트(ralphlauren.ethicspoint.com)를 운영한다. 10개가 넘는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 사이트에서는 윤리경영, 이해충돌, 선물수수정책 뿐만 아니라 괴롭힘 방지, 공정거래,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신고 및 문의 기능을 제공한다.

〈랄프로렌 Ethics Point 사이트〉



'비즈니스 행위 및 윤리정책'에서는 임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켜야 하는 윤리항목과 함께 개정의 갱신여부, 윤리정책 집행 절차 및 책임자 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랄프로렌 '비즈니스행위 및 윤리정책' 주요 내용〉

개정 현황	2016년 개정 이후, 경영진 변경에 따라 2018년 12월 관리 업데이트 실시
주요 항목(일부)	- 법정신 준수: 국제기업으로 전세계 수많은 법과 규제가 적용됨을 명시 - 선물 및 접대: 직원, 직원의 가족, 잠재적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및 조직으로부터 선물 금지(200달러 미만의 비정기적 현금 이외의 선물 제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의거 '외국 공무원'에 이익 제공 행위 금지, 글로벌 공급망 직원의 선물 수취 일절 금지 - 이해상충: 발생 가능한 상황의 예시와 범주 제시 - 회사 시스템 및 자산: 정당한 업무를 위해서만 접근 허용
정책의 집행과 운영	- 집행에 대한 책임, 정책 위반의 결과 등을 제시 - 내부 통제와 감사 등 잠재적 위반 및 우려사항을 보고하는 절차 규정 - 각 분야별 가능한 조치와 담당자/연락처 공시

출처: 랄프로렌 '영업행위 및 윤리정책(2016.08)'

랄프로렌은 2013년 아르헨티나 세관직원에게 물품의 빠른 세관통과를 요청하며 자사 제품 등 뇌물을 5년간 제공하여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으로 1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 부과 외에 랄프로렌은 규정준수와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조건으로 불기소 되었는데, 불기소

합의서에서는 세관중개업자의 계약해지, 반부패 정책 개정과 다양한 언어 제공, 제3자 실사절차 강화, 보다 엄격한 선물 수수 정책시행, 직원에 대한 반부패 교육실시, 아르헨티나에서 해당 브랜드의 소매 판매 중단 및 운영 중단과 같은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랄프로렌은 ‘영업행위 및 윤리정책’을 다양한 언어로 공시하고, 신고 및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랄프로렌의 ESG 2022 성과보고서의 중대성(materiality)평가에 따르면, ‘비즈니스 윤리’는 ‘경영권 이전’ 다음으로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높은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는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3. 힐라(FILA)

힐라는 스포츠웨어 등을 생산하는 의류기업으로 한국, 미국, 룩셈부르크 등의 다섯 개 법인의 ESG성적을 다루는 힐라홀딩스 통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제품생산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서의 환경·사회적 영향 관리와 투명성 확보 활동을 공시하고 있다.

힐라의 공급망 차원의 윤리경영은 협력사 선정과 계약관계 유지, 신고 및 처리절차 구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신규협력사 선정에 있어 자가 진단과 공장현장실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협력사의 윤리, 친환경 등 최소한의 ESG 요건을 평가한다. 또한 힐라 그룹과의 계약 당사자, 공급업체, 라이선스 파트너를 포함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대상으로 ‘힐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을 2021년부터 배포하였다. 행동강령은 인권, 윤리적 비즈니스 운영, 책임있는 비즈니스 운영 및 소싱, 자산 및 데이터,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윤리적 비즈니스 운영’에서는 (1)법률준수, (2)뇌물금지 및 반부패, (3)독점 금지 및 경쟁, (4)무역통제, (5)이해충돌, (6)대표 및 보고 정확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힐라는 글로벌 윤리 제보 채널을 운영하여 제보된 내용에 대해 100% 조치하였음을 공시하고 있다. 이때 제보 채널은 제3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제보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제보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 현황에 맞추어 4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운영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참고

- CGS리포트(2013.11),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 사례로 알아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랄프로렌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2), “Global Citizenship & Sustainability Report”
- 랄프로렌 ‘영업행위 및 윤리정책’(2016.08)
- <https://secure.ethicspoint.com/domain/media/ko/gui/57948/code.pdf>
- ralphlauren.ethicspoint.com
- SEC Announces Non-Prosecution Agreement With Ralph Lauren Corporation Involving FCPA Misconduct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3-2013-65.htm>
- H&M 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21), “Sustainability Disclosure 2021”
- 힐라 통합보고서(2021), “YOUR FILA IMPACT, Fila Integrated Report 2021”
- The H&M Way https://about.hm.com/content/dam/hm/about/documents/en/hm-way/HM%20Way_en.pdf
- 힐라 그룹 글로벌 협력사 행동강령 http://www.filaholdings.com/FILA_CoC_BP_KR.pdf
- 힐라 그룹 글로벌 임직원 행동강령 http://www.filaholdings.com/FILA_CoC_GM_KR.pdf



보고서리뷰

ESG시대 반부패 역할 : 청렴에의 투자

■ Investing in Integrity in an Increasingly Complex World:
The Role of Anti-Corruption amid the ESG Revolution(2022.06)



‘투명성 및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미래 협의회(Global Future Council on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이하 협의회)’는 2022년 6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간 컨퍼런스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경제의 효과적인 회복을 위해 기업 투명성, 책임성 및 우수한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며, 부패위험이 투자자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기업 평가의 중심이 되도록 ESG 투자 확산에 주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ESG프레임워크 내에서 기업의 부패는 G의 핵심 요소로서 측정가능한 동시에 S 및 E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청렴(Integrity)’은 ESG의 투명한 공시에 필수이며 ESG 투자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서 리뷰 코너에서는 ESG 공시의무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평가에 부패위험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와 쟁점, 그리고 투자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부패위험의 이해

부패는 기업가치와 미래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패는 고위이사결정자의 의사왜곡, 회계 조작에 따른 심대한 기업가치 하락 등과 같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부패 사실이 드러나면 기업은 막대한 재정 손실, 평판 손상, 시장 배제 등의 손실을 입게 되며 심지어 파산하게 될 수 있다.

엔론(Enron)의 파산 사례

약 20년 전, 미국의 에너지 유통 기업 엔론은 대규모 사기 계획이 드러났다. 한때 미국에서 자산 규모 7위였던 이 기업은 결국 2001년에 파산 신청을 했고 ‘분식회계 사건’으로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다.

투자자는 기업 재무 건전성의 주요 지표로써 부패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라도 부패 사실이 있다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따라서 투자자가 부패위험을 평가하여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패와 ESG 리스크

기업투자 결정 시 전통적 재무 리스크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리스크도 고려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인 ESG 투자의 영역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 기업의 ESG요소에 부패가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부패와 기업 거버넌스

ESG 투자 프레임워크 내에서 부패위험은 ‘G’의 범주에 포함된다. 리더십, 주주, 책임 및 이익창출에 중점을 두었던 거버넌스는 기후위기, 팬데믹, 인권침해 등의 경영환경 변화로 주주의 이익실현이라는 좁은 의미의 경영체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기업 이해관계자 관점의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개념의 확장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계된 ‘부패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부패와 환경

부패는 시장, 규제 집행 및 입법과정을 왜곡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브루킹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환경규제도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부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패는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및 보고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패가 삼림 벌채, 야생동물 불법 밀렵과 밀매, 생태계를 파괴하는 댐프로젝트 등을 조장한 사례가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 및 수질오염, 생물다양성보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의 주요한 환경의제가 연관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 부패와 인권

부패는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이익을 꺾고, 정부가 기업 이익을 위해 공공서비스로부터 돈을 빼돌리거나 심지어 인권유린에 침묵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비영리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기업의 화석연료 추출 및 삼림 벌채와 같은 생태계 파괴 활동과 불법광산의 인권 착취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세계 최악의 환경 및 인권 침해"의 원인 중 다수가 "세계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의 부패"라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투자의 중추(Backbone), 청렴(Integrity)

청렴성은 ESG 투자 기본요소로 보다 광범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부패는 ESG 우선순위를 흐릴 뿐만 아니라 ESG 관리 및 보고를 왜곡하고, 제3자검증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투자자가 부패위험을 고려하지 않고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또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부패는 주주, 임직원, 지역사회 및 지구에 이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중심 비즈니스²⁾를 실현하는 것 역시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최근 시민사회, 민간부문에서 투자 의사결정 시 반부패를 우선순위로 하는 방향전환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제로 ESG 우선순위에서 부패위험은 어떻게 다루고,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합의는 거의 없는 상태임을 보고서에서는 지적한다.

2)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기업경영을 의미하며, 미국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및 세계경제포럼의 국제비즈니스협의회 논의 아젠다로 다루어짐

ESG 투자 프레임워크 현황과 부패 관련 쟁점

전세계적으로 2020년은 ESG가 주류 투자전략으로 떠오르는 해였다. 기관투자자와 평가기관은 ESG 정책, 지표, 조사결과를 비즈니스모델에 포함하면서 ESG 투자영역을 눈에 띄게 강화했다. 그러나 시장의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ESG 평가기준의 적절함(신뢰성)에 동의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앞서 살펴본 부패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 프레임워크 내에서 부패는 국내 상황을 보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부패위험에 대한 관심 부족은 단기 이익 극대화에 대한 집착, 정확한 부패위험 지표 개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다 총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의제를 촉진하려는 노력들 속에서 부패위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를 위한 주요 ESG 공시 프레임워크

- EU 지속가능금융 공개규제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글로벌 표준
-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기업 보고 투명성
- 유엔 책임투자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
- 세계경제포럼(WEF)의 Toward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표준

이는 부패에 관한 '일관성 없는 용어, 프레임과 보고 권장사항'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프레임워크에서 부패는 '거버넌스' 하에서 손실위험으로 분류되나 일부는 '경제적 고려사항'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가 제시하는 의무공시 18개 지표에서는 부패위험과 관련이 높은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명백한 부패위험 지표(반부패 및 뇌물방지 정책, 해당 정책 위반에 대한 대응, 반부패법 또는 뇌물방지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가 선택사항으로 분류된다. 또한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표준에서는 전체가 아닌 일부 산업에서만 부패 관련 보고가 권고된다.

행동을 위한 제언

‘청렴성’은 기업의 재무 및 ES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보고서에서는 투자 의사결정과정 및 프레임워크 내에서 부패위험을 보다 적절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내부 프로세스와 정책에서 청렴성의 우선순위화

‘청렴’은 모든 투자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는 청렴성을 공개적으로 서약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 내부 인센티브, 고용관행 및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거버넌스 영역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ESG 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이사회에 반부패에 전문가-부패위험과 기타 리스크를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선임 등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ESG 보고 및 평가 프레임워크에 부패위험 반영

부패위험은 일관성있고 포괄적이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보고 및 평가 프레임워크에 통합되어야 한다. 부패위험 지표를 외부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ESG성과의 투명성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프레임워크 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고 부패위험에 대한 전체적이고 정확한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반부패·윤리경영의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청렴성을 이해하고 촉진하는 정도,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담당자의 역할, 기업의 반부패 정책과 부패위험 실사현황(기업 및 가치사슬 전반 차원) 및 결과, 기업 로비활동의 성격과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청렴을 ESG 핵심으로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반부패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촉진하고, 기존 부패위험 지표와 공시 권장사항에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 간의 집단행동이 도움될 수 있다. 자산소유주, 투자운용사, 투자 평가기관, ESG 데이터 제공자 및 표준화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보다 일관되고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를 정립함으로써 기업 ‘청렴’을 ESG 우선순위로 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Global Witness (2021.09), Last Line of Defense –The industries causing the climate crisis and attacks against land and environmental defenders



행동하는
윤리경영

ESG 공시지표로 보는 반부패·윤리경영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법(Bribery Act)과 반부패항목을 포함한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등 ESG 공시의무화로 윤리경영을 좀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변화하는 글로벌 법제와 표준에 부합하는 반부패·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노력이 핵심적이지만 동시에 내부정책과 통제를 통해 구성원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구성원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의식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요인이 중요하다. 기업은 반부패 윤리경영 측면의 총체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여 법률상의 의무에 대응하고, 행동기준을 수립하여 구성원이 이러한 정책과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소통해야 한다. 또한 이윤창출이라는 성과중심에서 벗어나 공정한 윤리경영문화 조성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며 기업 가치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과제이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윤리적 기업경영 문화를 내재화한다면 구성원들이 일상업무에서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행동하는 윤리경영』 코너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이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고, 관리자가 구성원의 윤리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ESG공시 가이드라인의 반부패·윤리경영 지표를 살펴보았다. ESG공시지표는 기업의 ESG 성과창출을 위해 관리되는 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이 대내외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에 가장 대표적인 공시 가이드라인인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지난 2022년 11월 최종본이 공식 발표된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³⁾ 되며, EU의 지침(Directive) 마련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법제화하여 공시도구로 활용될 두 지표를 살펴보면 반부패·윤리경영과 관련된 ESG 전략과 성과관리 방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1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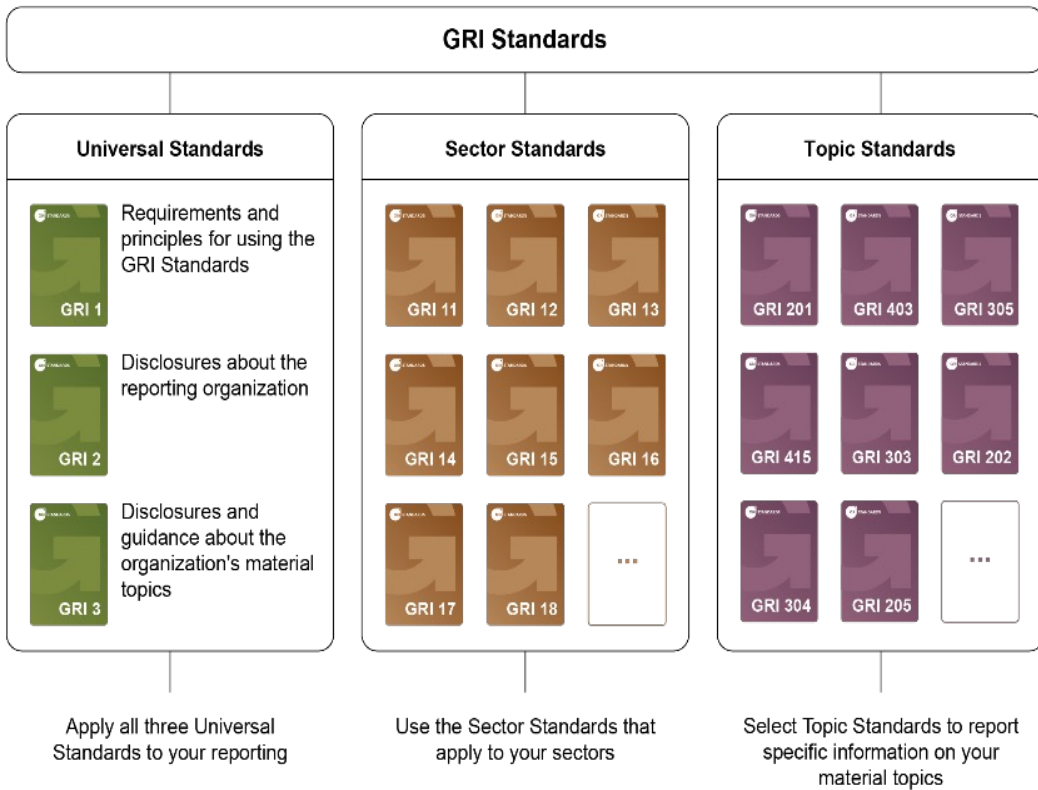
GRI의 보고기준은 그 대상이나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특징을 보인다. 성과보고에 앞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정의함으로써 투자자(주주) 뿐만 아니라 임직원, 공급망의 협력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함을 명시한다. 또한 기업 내·외부 환경과 자원, 거버넌스 등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의 영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관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지표가 사용될 수 있다.

GRI는 2000년 ‘G1’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지침 및 지표를 고도화해 2016년 지표를 모듈식으로 확장한 ‘스탠다드’를 제정하였다. 지표는 각각의 번호가 부여되는데, 조직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보고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를 공시하며 GRI 지표번호를 통해 색인(index)을 제시하여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 GRI 스탠다드는 보편적 기준(Universal Standards), 산업별 기준(Sector Standards), 주제별 기준(Topic Standards)으로 나뉘며, 주제별 기준은 경제분야 6개 주제의 13개 지표, 환경분야 8개 주제의 30개 지표, 사회분야 19개 주제의 34개 지표로 구성된다.

3) 포춘(Fortune)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70%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GRI 스탠다드를 사용하고 있으며(KPMG, 2020), 한국거래소 ESG포털(<http://esg.krx.co.kr>, 최종접속일: 2023.01.30)에 공개된 131개 기업의 모든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보고기준으로 GRI 스탠다드를 활용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GRI의 활용이 가장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GRI 스탠다드 체계〉



- 보편적 기준은 조직 프로필 및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GRI 1: 기초(Foundation)', 'GRI 2: 일반공시(General Disclosures)'와 'GRI 3: 중대주제(Material Topics)'영역으로 구성된다. GRI 1은 GRI 전체 기준의 기본 내용을 다루고, 기준의 목적과 원리 등을 내용을 담고 있으며, GRI 2는 기업의 세부적인 사항 및 프로필 등의 구조적인 방법을 제공하며, GRI 3은 중대주제로 조직에 영향력이 가장 큰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반부패·윤리경영 주제는 GRI 2일반공시에서 '윤리 및 청렴' 주제 하에 '반부패·윤리경영 추진체계, 정책, 사내교육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등의 지표를 다루고 있다.
- 또한 주제별 기준의 GRI 200 '경제성과' 안에서 '반부패(205)' 항목이 다루어 진다. 세부적인 공시지표로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교육,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항목이 보고되어야 한다.

〈GRI 스탠다드 반부패·윤리경영 주요지표〉

지표번호	핵심공시	공시내용
102-16 (일반공시)	가치, 원칙, 기준 및 행동규범	조직의 가치, 원칙, 기준 및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
102-17 (일반공시)	기업윤리에 관한 자문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조직의 윤리와 청렴성에 대한 자문, 비윤리·불법에 대한 보고체계(내외부)
205-1 (경제성과)	사업장 부패 위험 평가	부패 관련 리스크 평가 진행된 사업장 총 수와 비율, 확인된 중대리스크
205-2 (경제성과)	반부패 정책과 절차에 관한 공지와 교육	반부패정책 공지를 완료한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수와 비율) 반부패 교육을 받은 거버넌스 기구 구성원, 직원(수, 비율)
205-3 (경제성과)	확인된 부패 사례 및 조치	확인된 사건수 및 내용 - 법처벌 횟수 및 벌금액, 소송현황, 근로자 해고 및 징계 현황, 비즈니스 파트너 관련 사건과 계약종료 현황, 기업의 충분한 조치현황 등

출처: GRI 102: General Disclosure 2016, GRI 205: Anti-corruption 2016

2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022년 11월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의 보고표준안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CSRD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전략, 목표, 진행 상황, 비즈니스 관계, 공급망 정보를 다루는 광범위한 공시규제라면, ESRS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23년 1월 CSRD 발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되는 'EU에 기반을 둔 대기업과 상장기업, EU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까지 약 5만여 개의 기업이 이 표준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SRS의 지표 구조를 살펴보면, 2개의 공통기준(ESRS1, ESRS2)과 ESG항목으로 구성된 10개 주제별기준(환경 ESRS E1-E5, 사회 ESRS S1-S4, 거버넌스 ESRS G1)으로 나뉜다.

- ESRS의 반부패·윤리경영 관련 기준은 ‘거버넌스 G1-사업수행(Business Conduct)’에서 다루고 있다. ‘사업수행’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 접근방식, 운영과정, 절차와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이해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기업문화, 공급망 관리,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정치적 영향 및 로비활동, 내부 고발자 보호, 동물복지, 지급관행 등을 그 범주로 다룬다. 상세한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 반부패·윤리경영 주요지표〉

지표번호	지표명	주요내용
G1-1	기업문화와 사업수행 정책	관련 이니셔티브, 이행과 모니터링 관리감독 체계,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과 인센티브 도구(부패식별 및 조사 메커니즘, UN 반부패 협약 ⁴⁾ 에 부합하는 부패방지 및 뇌물수수 정책, 내부고발 제도 및 부호장치, 동물복지 정책(해당 시), 임직원 교육 등)
G1-2	공급망 관계관리	공급망과 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 조달 프로세스 관리, 중소기업 대상 연체 방지 정책과 관행 등(공급업체의 사회·환경성과 평가 및 실사를 포함)
G1-3	부패/뇌물 수수의 예방 및 적발	임직원 및 공급망 대상 대응체계와 교육현황 - 대응체계: 부패/뇌물 사건 처리절차, 업무독립성, 결과 보고 프로세스, 관련 체계가 없는 경우 향후 추진계획 - 교육현황: 대상, 전달방법, 횟수, 내용(범위)
G1-4	부패/뇌물 수수 사건의 처리	보고기간 내에 발생한 사건의 투명한 보고 - 확인된 사건수 및 내용, 법처벌 횟수 및 벌금액, 소송현황, 근로자 해고 및 징계 현황, 비즈니스 파트너 관련 사건과 계약종료 현황, 기업의 충분한 조치현황 등
G1-5	정치 로비활동	로비 등 정치적 활동의 투명한 공개(목적 및 비용) - 해당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책임자 - 직간접 금전 및 현물 기부액 - 로비 활동에 대한 기업의 입장(간략한 설명) - 해당시, EU/회원국 투명성등록부(Transparency Register) 식별번호
G1-6	지불관행	중소기업 및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 투명한 지불관행 - 자금집행까지 걸리는 평균일수 - 표준 지불조건 - 현재 진행 중인 연체 관련 법적절차 사건 수 등

출처 : EFRAG(2022.11), Draft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G1 Business conduct

4) UN에서 2003년 채택하고 187개 국가에서 비준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ESRS는 2022년 4월 지표초안에서 G1(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G2(사업수행)로 구성된 ‘거버넌스 지표’를 11월 최종안에서는 G1(사업수행)으로 수정·개편하였다. 이는 지표 축소가 아니라 초안의 G1 지표를 ‘공통기준’의 ①거버넌스, ②전략, ③영향, 위험과 기회 관리와 연계함으로써 반부패·윤리경영이 조직 메커니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지표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반부패·윤리경영에 대한 조직체계와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및 추진계획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변화를 이끄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ESG공시 및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규범 및 기관의 통합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GRI,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IIRC(국제통합보고위원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SB(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등 주요 5개 기관이 협력해 비재무정보 공시 글로벌 표준 마련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GRI와 IFRS(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의 기준 설정과 용어 일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통합은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비교가능하고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기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주요 ESG공시 기준을 통해 자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

GRI 102: General Disclosure 2016

GRI 205: Anti-corruption 2016

EFRAG(2022.11), Draft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G1 Business conduct
임팩트온(2020.09.23), GRI, SASB 등 글로벌 표준 빅5 문쳤다



문화 속
기업윤리

기업투명성, 리스크 관리의 시작

영화, '다크 워터스'



* 이미지출처: 네이버 영화

1962년 생태학자 레이첼 카슨은 저서 '침묵의 봄'에서 살충제의 유독물질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알린다. 이 책은 인류에 다방면으로 편리함과 혁신을 가져다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화학업계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경종을 울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영화 다크워터스는 최대 화학기업인 듀폰이 테프론이라는 프라이팬에 사용된 화학물질 위험성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파헤친 변호사의 소송사건을 그린 영화이다. 1998년 테프트 로펌의 변호사 빌롯(Billot)에게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소농장을 운영하는 농부 테넌트(Tennant)가 찾아온다. 듀폰의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가 테넌트의 소를 방목하는 목초지로 흘러 들어오면서 키우던 소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190여 마리의 소를 땅에 묻은 농부가 갖고 온 비디오테이프를 본 빌롯은 거대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한 끝이 보이지 않는 사건을 맡는다. 2차 대전 중 비밀리에 개발된 PFOA라는 합성화학물질은 탱크의 방수코팅에 쓰였다. 전쟁 후 듀폰은 이를 프라이팬 코팅에 쓰기 시작한다. 기업은 1962년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이 물질의 위험성을 알았고, 공장 노동자의 건강과 유전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공기배출과 매립이 지역사회

거주민에게는 암을 유발하고, 소비자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수십년간 알고도 대중에게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롯이 알아낸다. 길었던 소송 끝에 2006년 듀폰과 테넌트는 합의를 하였고, 듀폰은 2013년 PFOA사용을 중단하였다.

영화는 나다니엘 리치(Natanuel Rich)의 뉴욕타임즈 기사인 '듀폰사 최악의 악몽으로 기록되는 변호사(The Lawyer Who Became DuPont's Worst Nightmare)'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잘 달라붙지 않고 방수기능이 있는 테프론 프라이팬은 요리를 편리하게 해주었고, 전세계적으로 판매되었다. 그 만큼 많은 소비자가 PFOA에 노출된 것이다. 기업의 불법행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의 노력은 결국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 안전강화라는 공익신고 차원의 역할을 하였다. 지역주민의 대다수는 듀폰에서 근무하며, 기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유지됨에 따라 고발자 테넌트는 지역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이처럼 또한 공익신고자는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신고를 주저하게 되므로 '신고자 보호'와 같은 제도지원이 중요하다.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정보일지라도 소비자 안전에 관한 기업정보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듀폰은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제품 투명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대해 글로벌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규범준수 차원을 넘어서,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화를 다룬 이 영화는 투명한 정보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의 역할과 기업 내 메커니즘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며, 기업 행동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NYtimes(2016/01/10), "The Lawyer Who Became DuPont's Worst Nightmare"
권수진, 윤성현(2016).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설민수(2018). 공익과 충돌 시 영업비밀 보호의 한계. 법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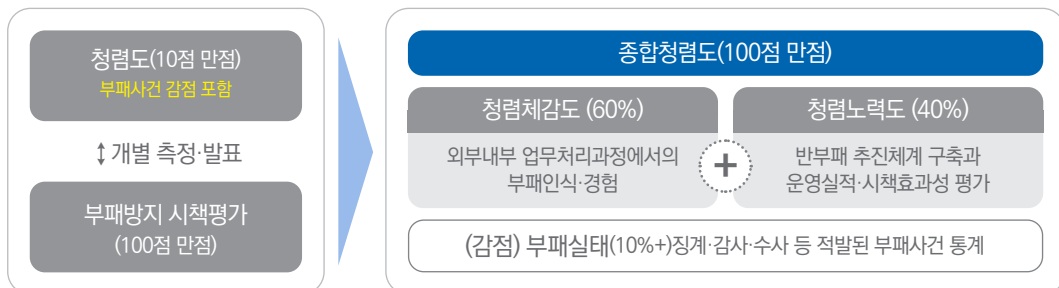
뉴스클리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월 26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신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적용한 첫 해의 결과이다. 총 569개 기관(15개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에 대한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종합하여 측정한다. 또한 기관의 유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되는데, 평가결과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했다. 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결과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로 설명하며,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월 26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3823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로 부패위험요인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성과를 발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제도이다. 그 성과를 종합한 결과, 506개 공공기관의 4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사전 차단 및 방지'하는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1월 11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3627

국내외 동향

관계부처합동,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발표



정부는 민간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을 지난 12월 27일 발표하였다. 이는 글로벌 표준과 국내 실정을 고려한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의 ESG역량강화 지원, ESG 채권가이드라인 강화, ESG정보 및 인력지원체계 구축, 공공부문 ESG경영 및 투자 선도 지원, 민관합동컨트론타워인 추진체계 설치의 6대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의무화되는 ESG 공시제도 대응을 위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KSSB)를 설립하여 국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의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유사항목에 대한 명칭일원화를 2023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재부 보도자료 2022년 12월 27일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62352

금융원,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은 1월 13일 ESG채권 인증평가에 대한 규제 공백에 대응하고 인증평가등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국제기준에 따른 신용평가사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1)평가사의 ESG등급부여 절차를 문서화하고, (2)독립성을 갖추며, (3)정보이용자가 등급 산출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론 등을 충분히 공개하며, (4)평가자 및 평가 대상 기업 모두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보수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한다. 2023년 2월 1일 이후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나 향후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방지, 현재 모두 1등급인 ESG채권의 차별화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23년 1월 15일 산업경제

<https://www.ebn.co.kr/news/view/1563183/?sc=Naver>

독일 공급망 실사법 시행에 따른 기본원칙 준수 필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인권보호 개선과 환경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는 법안으로 고용인원 3천 명 이상의 기업은 제품 공급망에 대한 실사 보고를 해야 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매년 독일연방 경제수출관리청(BAFA)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게시 등 공시의무가 있다. 보고서에는 (1)기업의 인권

및 환경 피해 위험의 식별 여부와 식별한 경우 어떤 위험인지, (2)기업의 실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3)조치의 효과와 영향을 기업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4)향후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적 의무 미준수에 따라 최대 80만 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대상은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국내 기업은 비록 대상 규모가 아닐지라도 공급업체로서 협력하는 기업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23년 1월 9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199787

■ 임팩트온 2023년 1월 9일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32>

EU, 입증되지 않은 그린워싱 광고 기업에 제재 부과 추진 중

EU는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가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U집행위원회는 '자연친화적', '100% 재활용' 등의 친환경 문구의 과학적 입증 의무를 부과하는 제품 광고 그린워싱 방지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과학적 입증을 위해서는 공인된 탄소 상쇄 방안을 활용했는지, 어떠한 탄소상쇄 사업을 통해 상쇄가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EU가 수립한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기준을 통해 기업 제품의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입수한 비공개 제안에 따르면, EU는 구체적인 규제도입과 시행에 대해서 함구하였으나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같은 시장 관행이나 환경 관련 상표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이 낮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EU는 지난해 3월 이니셔티브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거듭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 파이낸셜타임즈 2023년 1월 12일

<https://www.ft.com/content/5dde3181-3112-4280-8357-9b7881b7ae4c>

■ ESG경제 2023년 1월 21일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9>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개최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양극화, 경제침체 등 복합위기의 돌파 해법을 모색한 다보스포럼이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보건·안보·경제 위기 속에서 글로벌 협력을 복원해 보자는 취지에서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5급(최고 강도) 허리케인'에 비유하며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 속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포럼 등이 열렸으나 해법보다는 공감에 그친 행사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2022년 서명 즉시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자국의 친환경산업만 키우는 타국가 기업에 대한 불공정 조치라는 비판 등이 잇따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현장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ESG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이제 시작이고 걸음마 단계이며, 규제보다는 탄소중립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 조선비즈 2023년 1월 16일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1/16/GMQBSGINWVFIDE3KNRWWBG46Y4/

■ 한겨레신문 2023년 1월 19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6308.html

■ ESG경제 2023년 1월 23일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7>



웹툰

ESG 공시와 기업윤리

윤리네켓



*CSR(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정보공시 지침): 재무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EU의 지침



행사소식

2023 대한민국ESG포럼

최신 트렌드 및 선두기업의 우수사례를 통해 ESG경영 전략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포럼으로 2023년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ESG'를 주제로 개최

주최 (주)메세이상
일정 2023년 2월 17일(금)
장소 킨텍스
참고 <https://kesgforum.com/>

2023 국내외 사례를 통한 ESG 규제 대응

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경영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국내외 트렌드를 포함한 사례를 바탕으로 ESG규제 대응전략을 논의

주최 한국ESG경영개발원
일정 2023년 2월 3일(금)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
참고 <https://kemi.re.kr/80>

영국 AML & ABC Forum

영국의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뇌물수수 및 반부패방지(Anti-Bribery & Corruption) 규제 및 정책, 산업계 대응 동향을 논의하는 포럼

주최 Informa PLC
일정 2023년 3월 21일-22일
장소 영국 런던 레오나르도 로얄런던시티
참고 <https://informaconnect.com/aml-and-abc-forum/>



안내

2023년 기업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수강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하단의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을 작성하신 후 청렴연수원 담당자에게 3.1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양식은 이메일(hse20@korea.kr)로 송부, 선정기업 유선 통보 예정

청렴윤리경영 교육이란?

- 청렴윤리경영 :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윤리원칙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법적·경제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지며, 윤리원칙에 따른 경영과 조직의 핵심 가치 내재화를 뜻함.
- 청렴윤리경영 교육 : 기업 내 청렴윤리경영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조직 역량), 구성원들의 청렴 윤리의식 함양과 윤리적 딜레마 해결능력 배양(개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전문 교육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2023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개요

- ① 운영 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1월
※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희망일자에 가급적 편성 예정
- ② 개설 과정
- 과 정 명 :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방문교육」
- 교육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국내 기업(기업유형 불문)
- 교육시간 : 1시간30분 ~ 2시간(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 운영)
※ 운영방식 : 집합 교육(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Zoom, 구루미 등) 전환 가능)
- ③ 주요 내용 및 프로그램 (※ 청렴연수원 교육 담당자 협의를 통해 맞춤형 구성 가능)
- 청렴윤리경영의 의의, 국내·외 최신 동향 및 우수 사례 등 공유
- 업종별 빈발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방안
- 판소리, 연극, 샌드아트 등 공연 방식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 교육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담당자 (☎043-901-6116 최길호사무관, 6118 김준형주무관)에게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

기업명	규모①	업종②	대상(인원)	희망일자③	교육방법	교육장소④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⑤
(주) 000	중견기업	제조업	임원 30명	'23. 0.0	집합/온라인	서울 본사 강당	홍길동	감사실	휴대전화 사무실

- 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중 택 1, ② 국제청 '업종분류코드'에 따름, ③ 2023년 4월 이후 최소 2개 일자 기업,
④ 지역과 장소 동시 기재, ⑤ 담당자 사무실 및 휴대 전화 번호 동시 기재



Q. ESG 공시에서 다루는 반부패·윤리경영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윤리경영 담당부서 운영
- ② CEO의 반부패 경영 의지 선포
- ③ 임직원 인식 교육
- ④ 의사결정 시 허위보고

퀴즈 응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esg@assist.ac.kr) 앞으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2월 20일 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김하진님, 박수빈님, 백창열님, 이지영님, 정정현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 · 제도 · 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 | |
|----------|--------------------------|
| ① 상담신청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 안내 |
| ② 상담관지정 |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 ③ 사실관계조사 |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 ④ 결과확인 |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

